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28

발의연월일: 2024. 11. 20.

발 의 자: 강경숙・김준형・차규근

조 국・황운하・신장식

박은정 · 김재원 · 김문수

문정복 • 이해민 • 서왕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원과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학생은 제외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자치활동과 학교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 학생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학교 내 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제17조 및 제31조).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를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학생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1. 학생의 자치활동 및 학생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 학생의 학교생활과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학생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또는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학생회의 설치 · 운영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학부모"를 "학생 대표, 학부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	제17조(학생자치활동) <u>①</u>
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u>그</u>	<u>ক</u>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위하여 학교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u><신 설></u>	② 학생회는 학생의 학교생활
	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
	<u>렴한다.</u>
	1. 학생의 자치활동 및 학생회
	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학교생활과 학교운영
	에 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
	<u> </u>
<u><신 설></u>	③ 학생회는 제2항 각 호의 사
	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또는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
	회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
	<u>다.</u>
<u><신 설></u>	④ 학교의 장은 학생회의 설치

<신 설>

- - ① (생략)
 -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 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 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③ (생 략)

-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학생회의 설치・운 영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 (현행과 같음)

2				
	<u>학생</u>	대표,	학부모-	

③ (현행과 같음)